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(김동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8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 19.

제 출 자 : 김동규, 김재국, 김진희,
나정숙, 성준모, 손관승,
송바우나, 유화, 윤태천,
전준호, 주미희, 홍순목

1. 제안이유

- 안산시가 설치·설립·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, 관람료, 사용(이용)료, 수강료, 수수료, 진료비 등에 대하여 각 개별조례에 명시된 국가보훈 관련 대상자의 감면사항을 본 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여 안산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보다 발전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7조(복지지원) 제1호 중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
‘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’를
▶ ‘시가 설치·설립·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, 관람료, 사용(이용)료, 수강료, 수수료, 진료비 및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’으로 수정하여 감면사항을 확대함
- 부칙 제2호(다른 조례의 개정)에 각 개별조례 중 보훈대상자 감면사항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명시함

3. 조례(안) : 붙임

4. 관련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5. 예산수반사항 : -

6. 기타 참고사항 : 관련법규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”를 “법령 및 조례에 따라”로, “각호에서 정한”을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가 설치·설립·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, 관람료, 사용(이용)료, 수강료, 수수료, 진료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안산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란의 문화·생활체육·취미·교양강좌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율 중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0%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%”로 한다.

② 「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③ 「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8호를 삭제한다.

6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④ 「안산문화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⑤ 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”로 하고,

[별표2] 의 연습사용료 비교란 8호 가. 중 “국가유공자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⑥ 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5호 중 “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”로 한다.

⑦ 「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망자가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(유가족 제외)

⑧ 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최(주관)하는 대회 : 50%

⑨ 「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⑩ 「안산시 수도급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⑪ 「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나목 중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한다

⑫ 「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⑬ 「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⑭ 「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⑮ 「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신·구 조문대비표

<p>제7조(복지 지원 등)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2.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3.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	<p>제7조(복지 지원 등)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시가 설치·설립·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, 관람료, 사용(이용)료, 수강료, 수수료, 진료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2.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3.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
---	---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2781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12월 9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본 개정안의 부칙 중 「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」, 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, 「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 개정안에 보훈대상자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안이 상정되어 각 개별조례를 수정하고 본 조례의 부칙에서는 삭제하려고 함

□ 주요내용

- 안 부칙 제2조 제2항, 8항, 9항을 삭제함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수정하며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부 칙	부 칙
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(생략) <u>② 「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1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u> <u>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u> <u>③ (생략)</u> <u>④ (생략)</u> <u>⑤ (생략)</u> <u>⑥ (생략)</u> <u>⑦ (생략)</u> <u>⑧ 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15조의 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u> <u>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최(주관)하는 대회 : 50%</u> <u>⑨ 「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u> <u>8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u> <u>⑩ (생략)</u> <u>⑪ (생략)</u> <u>⑫ (생략)</u> <u>⑬ (생략)</u> <u>⑭ (생략)</u> <u>⑮ (생략)</u></p>	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u>② (개정안 제3항과 같음)</u> <u>③ (개정안 제4항과 같음)</u> <u>④ (개정안 제5항과 같음)</u> <u>⑤ (개정안 제6항과 같음)</u> <u>⑥ (개정안 제7항과 같음)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⑦ (개정안 제10항과 같음)</u> <u>⑧ (개정안 제11항과 같음)</u> <u>⑨ (개정안 제12항과 같음)</u> <u>⑩ (개정안 제13항과 같음)</u> <u>⑪ (개정안 제14항과 같음)</u> <u>⑫ (개정안 제15항과 같음)</u></p>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”를 “법령 및 조례에 따라”로, “각호에서 정한”을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가 설치·설립·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, 관람료, 사용(이용)료, 수강료, 수수료, 진료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안산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란의 문화·생활체육·취미·교양강좌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율 중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0%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%”로 한다.

② 「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③ 「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8호를 삭제한다.

6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④ 「안산문화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⑤ 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”로 하고,

[별표2]의 연습사용료 비교란 8호 가. 중 “국가유공자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⑥ 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5호 중 “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”로 한다.

⑦ 「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망자가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(유가족 제외)

⑧ 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최(주관)하는 대회 : 50%

⑨ 「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⑩ 「안산시 수도급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⑪ 「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 ·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나목 중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”를 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한다

⑫ 「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⑬ 「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⑭ 「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⑮ 「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신·구 조문대비표

<p>제7조(복지 지원 등)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<u>법령</u>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2.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3.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	<p>제7조(복지 지원 등)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<u>법령</u> 및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시가 설치 · 설립 ·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, 관람료, 사용(이용)료, 수강료, 수수료, 진료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2.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3.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
--	--